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9.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 협약에 따라 중구와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납부금액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 협약에 따라 중구와 용산구에서 납부하는 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용도는 청소시설·장비개선,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안 제3조)
- 다.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국장 4명, 구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전문가 2명으로 하고, 간사는 청소행정과장, 서기는 자원회수시설 업무담당주사로 함(안 제5조, 제10조)
- 라.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비치하여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6조, 제8조, 제9조)

- 마.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바.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정리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사.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1999.8.31 법률 제6002호) 제133조
지방재정법(1999.8.31 법률 제6002호) 제110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마포구공고 제1998-10호(1998.1.19) → 의견제출 없음
- 나. 1999. 9.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다. 1999. 9. 조례(안) 구의회 제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마포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 협약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납부하는 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2.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 위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과 용역
5. 기금에 의거 설치된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영비
6. 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운영비, 홍보비 및 기타 활동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본청의 국장 4인
2. 구의원 2인

3. 주민대표 3인

4. 환경전문가 2인

⑤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원회수시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회수시설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 대장

(단위:원)

년월일	예금				인출			잔액
	재원	예금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기금 출납부

(단위:원)

년월일	적요	수입	지출	결재			
				담당	계장	과장	국장